

대구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3가단80798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망 C의 소송수계인

B

4. D

5. E

6. F

변론 종결 2014. 7. 15.

판결 선고 2014. 8.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50,885원과 그 중 65,653,97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18,870,646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각 2014. 3. 1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2. 7.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7. 19. 접수 제921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12. 12.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2. 28. 접수 제1748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B와 피고 F 사이에 2013. 2.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F는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2. 28. 접수 제260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일반자금대출과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각 신용보증(2006.
10. 11.과 2010. 2. 25.)을 한 사실, 각 당시 피고 B와 망 C이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3. 1. 4.
이자 연체 및 2013. 3. 8. 당좌부도로 인하여 기한이익 상실을 발생시키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원고가 2013. 3. 19.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65,653,90원을, 2013. 3. 25.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18,870,646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B, 망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여 대지급금 1,150,529원이 발생하였고, 미수위약금 75,740원이 발생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손해금율이 연 12%인 사실, 망 C의 사망으로 피고 B가 망 C을 상속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50,885원과 그 중 65,653,97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3. 3. 19.부터, 18,870,646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3. 3. 2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와 피고 E, F 간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대구 달성군 G 묘지 200㎡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지목이 묘지여서 사실상 재산상 가치는 크지 않고 공시지가로 그 시가를 산정하면 9,872,959원 정도이다)을 채권자 중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게 순차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앞서 살펴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B의 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E와 F의 약의1)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피고 B가 피고 E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 E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E와 F의 각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와 F는 공히, 자신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제출한 증거들2)이나 B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E와 피고 F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선의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와 피고 F는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범준

별지

- 1) 여기서 '악의'란, B가 피고 E와 F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즉, B가 피고 E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2)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 E가 B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들인데, 피고 E나 피고 F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B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